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18.7.1 확대 시행)

▶ 사업 개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증가하는 경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종류

- ① 교대제 도입, 확대
- ② 실 근로시간 단축(주 평균 2H이상 단축),
- ③ 주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15513호, 2018.3.20)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
- ④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30일 이상 안식 휴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 “주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후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로시간 기록만 인정

▶ 지원 대상

(공통요건)

공모절차(① → ② → ③ → ④)로 승인받은 사업장이 사업 실시
단, “주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은 **요건심사(③ → ④)로 지원** [① → ② 생략]

(공모절차) 참여신청 승인 및 실시

-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② 심사 및 승인(재량사업, 예산범위내 승인) →
- ③ 제도 도입(근로자 과반수 동의, 노사간 협약) 및 시행 → ④ 장려금 신청, 지급, 지도점검, 사후관리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요건 및 한도

(인건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①~④)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수준 및 기간 참조)

* 공모절차 방식

승인인원 범위내

* 요건심사 방식

재직피보험자 전체의 주 단축근로시간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한도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임금감소액 전부(일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 최소10만원~최대40만원)

* 공모절차 방식

증가근로자 1인당 재직근로자 10명까지

* 요건심사 방식

증가근로자 1인당 재직근로자 10명까지(단, 버스업종(특례)은 1인당 20명까지)

임금감소액 보전금액(계산식)

$$= \text{단축 후 급여}^{\textcircled{1}} - \text{단축 전 급여}^{\textcircled{2}} \times \left(\frac{\text{단축 후 총 근로시간}^{\textcircled{3}}}{\text{단축 전 총 근로시간}^{\textcircled{4}}} \right)$$

① 단축후 급여 : 단축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월간 월평균 급여 ② 단축전 급여 : 단축일이 속한 전년도 월평균 급여

③ 단축후 총근로시간 : 단축일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3월간 월평균 근로시간

④ 단축전 총근로시간 : 단축일이 속한 달의 전 6월~4월간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 초과시간은 1.5시간으로 계산

▶ 지원 수준 및 기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내에서 인건비, 임금감소액 지원

1. 기존 공모절차 방식 (사전신청 → 승인후 → 실시, ① ② ④)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 (1명, 3개월 지급한도)		제직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1명, 3개월 지급한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1년	12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2년	1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2. 요건 심사 방식 (요건충족 → 실시, ③)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52시간[68시간, 특례제외기업]으로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기업)의 지원체계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개편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1명, 월 지급한도)		임금보전 (1명, 월 지급한도)	
500인 초과	60만원, 1년		-	
300인 ~ 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4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비제조업	4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4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비제조업	40만원, 1년

*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1명, 월 지급한도)		임금보전 (1명, 월 지급한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2년)		6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40만원	40만원	
300인 미만	제조 및 특례제외(2~3년)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80만원	40만원	
	비제조(1~3년)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80만원	40만원	

* 시행일이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1명, 월 지급한도)		임금보전 (1명, 월 지급한도)	
500인 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	60만원, 1년	40만원, 1년	
	52시간 조기단축	60만원, 법정시행일 /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 500인	법정근로시간 단축 *	60만원, 1년	40만원, 2년	
	52시간 조기단축	60만원, 법정시행일 /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법정근로시간 단축 *	80만원, 1년	40만원, 2년	
	52시간 조기단축	100만원, 법정시행일 / 이후 80만원, 2년+∞	40만원, 2년+∞	

※ 조기단축은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년간 지원

* 노선버스 업종은 법정근로시간내 근로시간내 단축도 지원

▶ 신청 절차

- 3개월 단위로 신청(지원기간은 제도 도입일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산정)

-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상세한 세부사항은 김해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gimhae)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 문의처



김해 고용복지+센터(김해시 호계로441, 4층) 기업지원팀 T. 055-330-6420, 6434, 6436, 6437

양산 고용복지+센터(양산시 중부로 10, 3층) 기업지원팀 T. 055-379-2421~2, 2430~1

밀양 고용복지+센터(밀양시 백민로 69, 2층) 기업지원팀 T. 055-350-2804